

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속 교수학습개발센터(이하 '센터'라 칭한다)라고 한다.

제2조(위치) 본 센터는 서울신학대학교(교육혁신원) 내에 둔다. <개정 2017.11.21.>

제3조(목적) 본 센터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건학 정신이 지향하는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구,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특히 교수 학습 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 및 교수·학생 학습 지원, 교육 매체 제작 지원 및 특수강의(사이버 강의 포함)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목적을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 <개정 2017.11.21.>

1. 교수지원: 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 연구·개발·지원
2. 학습지원: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연구·개발·지원
3. 교육매체지원: 수업기자재 지원
4. 이러닝 지원: 교수설계 및 강좌개발

② 센터에서 시행된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, 그 분석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1.21.>

제2장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조직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획,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칭한다)를 둔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전임 교수로 구성한다. 다만,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.
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본 위원회는 본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1. 기본 계획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연구 위원회 등 업무와 관련된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5. 연구원 및 필요 인력에 관한 추천사항

⑥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

다.

제6조(소장) ① 본 센터에는 소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9. 3. 1., 2017.11.21.>

③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산학협력중점교수) ① 본 센터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11.21.]

제8조(전문위원) ① 본 센터에 필요한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연구원) ① 본 센터는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또는 CTL 유관경력 3년 이상자로 센터 목적에 적합한 자로 한다.

③ 연구원의 자격에 따라 책임 연구원, 선임 연구원, 연구원 직책을 두되 각 직책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책임연구원: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유관 경력 5년 이상 자격을 가진 자
2. 선임연구원: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유관 경력 3년 이상 자격을 가진 자
3. 연구원: 관련 석사학위 이상 또는 유관경력 3년 이상 자격을 가진 자

[전문개정 2017.11.21.]

제10조(직원 및 조교) ① 본 센터는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직원과 조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11조(학생모니터링단)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사업 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학생의 건 수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.

② 학생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학생지원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2.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3.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도출

③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생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한다.

④ 학생모니터링단은 학생 자치활동으로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,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총괄하고 관리한다.

제3장 재정 및 기자재관리

제12조(재정) ①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, 자체 사업 수입,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기자재 관리) 본 센터 소유의 교육 기자재 및 장비의 관리는 본 센터의 기자재 대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09.7.15.>

제14조(감사) 본 센터의 감사는 본 대학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변경규정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변경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